# 서울특별시 미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4. 2. 28. 복지도시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2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2. 20.

다. 상정일자: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, 2,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한선미 의원

#### 가. 제출이유

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용량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 부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제작 중단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수수료 규정 삭제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
  - 가) 「폐기물관리법 |
  - 나)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(환경부)」
  - 다) 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(환경부)」

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기타

가) 입법예고 : 2023. 10. 26 ~ 2023. 11. 15. (의견 없음)

나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규제 없음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의 규격사항과 수수료의

변동사항을 혼용없이 사용하도록 과거 개정 전 표기를 삭제하고

규격별 일반주택 및 사업장으로만 구분하는 등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

불필요한 표기 사용을 삭제하고 현행 금액만 표기하기 위해 제출된 것

임. 이는 자치법령의 규율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

하고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활동으로 바람직하

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## [관계법령]

### 「폐기물 관리법」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#### ②~④(중략)

- ⑤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,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(從量制)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(이하 "종량제 봉투등"으로한다)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,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⑥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・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⑦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·유통·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